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신정호 의원 외 40명
- 나. 의안번호: 제2835호
- 다. 발의일자: 2021. 10. 15.
- 라. 회부일자: 2021. 10. 20.

2. 제 안 사 유

- 서울시는 2022년까지 2조6천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대응하고 사람·자연·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세부 추진 전략은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5대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나, 이는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시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에 편중되어 있으며, 국내외 도시(기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규범 대응,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한 배출권 확보 등 국제협력 방안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가. 국제협력 증진, 국제규범 대응, 탄소중립 지방도시 실천연대 참여, 개도국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노력,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5. 검토 의견

가. 제정사유

- 서울시는 2022년까지 2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대응하고 사람·자연·미래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세부 추진 전략은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5대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나, 이는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시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에 편중되어 있고, 국내외 도시(기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한 배출권 확보 등 국제협력 방안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기본원칙(제3조), 시장의 책무(제4조),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규범 대응(제5조, 제6조), 전문인력 양성(제9조) 및 국제협력 체계 구축(제10조) 등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세부적으로 본 조례안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이나, 안 제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그대로 명시하고 있는 바,

제명을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안 제7조를 비롯하여 여러 국내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제정 예정인 「탄소중립 기본 조례」(가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조(제 목)	내 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목적: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및 국제협력 체계 구축 - 기후변화, 기후위기, 탄소중립 및 국제협력 등 관련 용어 정의
제3조(기본원칙)	-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규정
제4조(책무)	- 탄소중립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제5조~제8조	- 국제협력 증진, 국제규범 대응,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및 개도국 지원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노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제10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제4호의 ‘국제협력’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공적개발원조(이하 ODA¹⁾)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정의와 유사하나, 조례의 목적상 국제협력을 ODA 사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 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의를 차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1)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안 제2조(정의)의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p>4. "국제협력"이란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u>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협력을 말한다.</u></p>	<p>4.-----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u>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또는 외국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u></p>
<p>5.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p>	<p>(삭 제)</p>

- 안 제5조는 서울시가 외국도시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 조사 및 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재정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한 것임.

안 제6조는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정부가 파리협정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국제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음.

- 안 제8조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확보를 주요 골자로, 제1항은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제2항은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본 조의 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확보'는 탄소중립을 위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수적인 이득일 뿐, 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조 제목과 내용을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시 환경 기본 조례」,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등 기후환경 분야의 다양한 조례²⁾에 국제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통합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기후환경분야 국제협력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지구환경의 보전 및 국제협력 등) ① (생략)

② 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② (생략)

③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5조(기후변화대응 협력망 구축) 시장은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협력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제12조(국제협력의 증진) 시장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그린뉴딜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등